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송명화 의원 외 17명
- 의안번호 : 제2161호
- 발의일자 : 2021년 2월 5일
- 회부일자 : 2021년 2월 9일

2. 제 안 이 유
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‘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’ 권고 의결을 통해 공공시설의 대관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관자에 대한 불공정·불편 요인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. (’20. 9. 7.)
- 특히 예약취소 시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고, 선납액 일체 미반환 등의 과도한 공제와 운영자 편향의 사용료 납부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.
- 이에 예약취소 시 환불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한 이용료 반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이용료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규정함(안 제19조제1항).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 재 효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결 권고에 따라 공원이용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의 반환 규정 및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「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」 의결¹⁾을 통해 ‘불공정·불편한 대관사용 조건’으로 계약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음.
- 이에 따르면 국·공유재산 사용료 과오납, 사용 취소·철회 등 사유가 있으면 운영기관은 국·공유재산 법령 등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하지만, 다수의 기관에서 행정규칙 및 조례를 근거로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여도 위약금을 반환하지 않거나, 과도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였음.
- 특히, 선납액 일체 미반환 등 과도한 공제는 일반계약의 평균 10% 위약금 수준과 특정일까지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과 배치되어 불공정 거래로 지적 되었으며, 선납금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및 민간계약의 보증금 수준(10%)과 달리 과도한 보증금(30~50%)을 요구하는 사례는 운영자에 편향된 사용료 납부방식이기 때문에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.

〈‘사용료 선납방식 현황’ 규정 사례(국민권익위원회)〉

기관명	시설	납부방식
인천문화예술회관	대공연장	▪ 계약금: 승인통보 후 총액 50% ▪ 잔금: 사용예정일 30일 전 총액 50%
세종문화회관	대극장	▪ 계약금: 승인통보 후 9일내 총액 30% ▪ 잔금: 사용예정일 90일 전 총액 70%

1)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결, 「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」 의안번호(제2020-419호), 의결일(2020년 9월 7일)

- 현행 규정은 이용 당일 1일전 80%, 2일~4일 전에는 50%를 공제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과도한 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.

〈현행 시행규칙과 조례 개정안의 비교〉

현재 시행규칙 <신설 2018. 5. 17.>		조례 개정안	
취소일	환불	취소일	환불
이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	전액환불	이용예정일 7일전	전액환불
이용예정일 9~7일전	사전 납부된 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		
이용예정일 6~5일전	사전 납부된 금액의 30% 공제 후 환불	이용예정일 6~1일전	사전 납부된 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
이용예정일 4~2일전	사전 납부된 금액의 50% 공제 후 환불		
이용예정일 1일전	사전 납부된 금액의 80% 공제 후 환불		
이용 당일	환불불가	이용 당일 이후	10% 공제 및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※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가비는 환불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(당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고 당일 취소할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)		※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: 이용료 전액 반환	

-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용료 반환 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완화하고 그 사유를 세분화하여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이용료 반환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현행 규정은 캠핑장 등 시설이용 1일전 취소율이 높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‘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’을 참고하여 개정²⁾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실수요자 사용기회 확보 및 시설이용률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조례안의 이용료 반환 규정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.

2) 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는 것에서 현행 시행규칙의 차등 공제로 개정(2018.5.17.)하였으며, 이후 1일전 취소율이 감소('17년 36.9% → '19년 4.2%)하여 실수요자 사용기회 확보 및 시설이용률 제고 효과가 있었음.

- 또한,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용료 반환 대상으로 한 공공문화시설 대관료에 비해 공원이용료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무분별한 예약과 취소가 빈번함을 고려해 공제율의 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.

〈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예약금 반환 기준 개정(2020.8.26.)〉

환불기준(전)		환불기준(후)	
취소일	환불	취소일	환불
이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	전액환불	이용예정일 5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	전액환불
이용예정일 9~7일전	사전 납부된 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	이용예정일 4~3일전	사전 납부된 금액의 20% 공제 후 환불
이용예정일 6~5일전	사전 납부된 금액의 30% 공제 후 환불		
이용예정일 4~3일전	사전 납부된 금액의 50% 공제 후 환불	이용예정일 2~1일전	사전 납부된 금액의 30% 공제 후 환불
이용예정일 2일전~당일 취소	사전 납부된 금액의 80% 공제 후 환불		
이용 당일	환불불가	이용 당일 취소 또는 미사용자	사전 납부된 금액의 50% 공제 후 환불
※ 성수기,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		※ 성수기,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	